



## 교육과정에 관한 운영규정

규정 번호	2-4-3
제정 일자	2011. 12. 12.
개정 일자	2024.3.20.
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

<2020.12.15 개정>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(이하“본 대학”이라한다)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반영하고 지역 사회·지역산업·국가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 
<2014.2.27 개정>

**제2조(교육과정 편성의 기본정책)** ① 본 대학은 직무능력 향상과 인성을 갖춘 중견직업인을 양성하여 지역산업과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무역량 교육과정 편성을 기본정책으로 한다.  
<2014.2.27, 2020.12.15. 개정>

② 학과의 교육목표는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.  
<2014.2.27 개정>

③ 교육과정개발 및 개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<2013.3.4, 2019.11.14 개정>

1. 교육과정의 개발은 전면 개정으로 하며 개편은 부분개정으로 시행한다. <2017.12.6, 2019.11.14 개정>

2. 교육과정 개발주기는 3년마다 시행하며 개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 <2017.12.6, 2019.11.14 개정>

3. <2015.12.2 개정, 2016.2.5.삭제>

4. 학과명을 변경한 학과는 개발주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학과명 변경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변경학기부터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한다. <2012.12.15. 신설, 2020.12.15. 개정,>

④ 전공교과목 편성 기본정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<2014.2.27, 2019.11.14 개정>

1.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직무역량 교육과정을 편성한다. <2012.12.15., 2020.12.15 개정>

2. 학과의 교육과정은 직무역량 보완주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완·개편한다. <2012.12.15.

2020.12.15 개정>

3. 직무역량 교육과정을 운영한 학과는 주기적으로 직무능력인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 
<2012.12.15., 2020.12.15 개정>

4. 요구자(재학생, 졸업생, 기업체)의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한다.

⑤ 교양교과목 편성 방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<2019.11.14.개정>

1. 핵심역량 교양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. <2012.12.15., 2020.12.15 개정>

2. 직업인으로써의 가질 수 있는 인성교육과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노력한다.

3. 요구자(재학생, 졸업생, 기업체)의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한다.

4. 교과목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한다.

**제3조(위원회 설치)**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역할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 <2019.11.14 개정>

**제4조(교육과정)** ① 본 대학의 교과구분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이루어지며 교양교과는 교양 선택과 교양필수로, 전공교과는 전공필수와 전공 선택으로 나눈다.

② 단기 실습학기제 현장실습은 졸업학기에 의무적으로 편성하며 학점은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3학점 이내로 한다. <2017.9.27 개정>

③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세부지침은 학과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정책·심의위원회의에서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마련하고 대학평의원회의의 자문을 얻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 <2012.6.11, 2014.2.27 개정>

④ 학과의 교과과정 편성은 교과과정 편성지침에 따라 학과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편성하고 교육과정정책·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 <2012. 6.11, 2014.2.27 개정>

**제5조(이수단위)** ① 이론과목은 주당 1시간씩 15주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편성하고, 실험·실습과 실기 관련 교과목은 주당 2시간씩 15주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편성할 수 있다.

② 2·3년제 학과는 전문교양교과를 최대 4학점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수구분은 교양 선택으로 한다. <2016.8.19 개정>

③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2년제 70학점이상, 3년제 105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양교과와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 할 수 없으며, 2년제는 교양교과 6학점 전문교과 50학점 이상, 3년제는 교양교과 8학점, 전문교과 7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<2019.2.18., 2024.2.22. 개정>

④ 전문교과의 시수의 50%이상은 실험실습으로 편성하되 인문사회계열은 학과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⑤ 매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. 다만, 장애학생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이수 할 수 있다. <2014.2.27., 2019.2.18., 2024.2.28. 개정>

⑥ 계절 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. <2014.9.16 개정>

⑦ 정규수업이외에도 별도의 학점인정 지침에 따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

⑧ 단기 실습학기제 현장실습은 반드시 개설하며 학과의 특성에 따라 최대 3학점 이내로 배정하고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2017.9.27 개정>

**제6조(시간표 편성)** ①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을 1교시로 하며, 교시별 수업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. <2013.3.4, 2013.12.10 개정>

주간				야간	
교시	시간	교시	시간	교시	시간
1교시	09:00~09:50	6교시	14:00~14:50	10교시	18:00~18:50
2교시	10:00~10:50	7교시	15:00~15:50	11교시	18:55~19:45
3교시	11:00~11:50	8교시	16:00~16:50	12교시	19:50~20:40
4교시	12:00~12:50	9교시	17:00~17:50	13교시	20:45~21:35
5교시	13:00~13:50			14교시	21:40~22:30

② 전임교원(강의전담 제외)의 수업일수는 주 4일 이상으로 한다. <2019.11.14., 2024.2.22. 개정>

③ 전임교원(강의전담)의 수업일수는 주 3일 이상으로 한다. 단, 전임교원(산학협력)의 수업일수는 주 2일 이상으로 한다. <2014.9.16, 2016.8.19 개정>

④ 수업시간은 수업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과 특성에 맞게 배정 할 수 있다. <2013.12.10, 2019.2.18 개정>

⑤ <2019.2.18 삭제>

⑥ <2019.2.18 삭제>

**제7조(강좌 운영)** ① 강좌 당 수강인원은 학과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반별 인원을 입학정원의 최소 단위인 30명을 기준으로 한다. 단, 복학, 전과, 재입학 등 학적변동에 따른 인원의 초과한 강좌 당 45명으로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분반할 수 있다. <2012.6.11., 2024.2.22. 개정>

② 직업기초 교양강좌의 경우 온라인강좌로 운영하며, 강좌 당 최대 수강학생은 80명까지 운영할 수 있다. <2024.2.22. 개정>

③ 합반은 동일교과목 2개 반의 수강인원이 45명 이하인 경우 합반한다.

④ 분반의 경우 최대수강인원이 초과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분반 할 수 있다. 또한 다음 각 호에 한해서 분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분반할 수 있다. <2024.2.22. 개정>

1. 실습실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한 경우
2. 수업기자재 수량이 부족한 경우
3. 졸업 작품 교과목의 세부전공이 다른 경우
4. 개인레슨강좌의 경우
5. 직무역량의 교과목 운영상 필요한 경우 <2014.2.27., 2012.12.15., 2020.12.15 개정>
6. 기타 교과목 운영 상 필요한 경우

⑤ 교과목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에 폐강한다. 단, 학과 요구 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. <2019.2.18., 2024.2.22. 개정>

**제8조(시간표 공고 및 변경)** 확정된 시간표는 수업개시 1개월 전에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수업시간표는 총장의 승인 없이 변경 할 수 없다. <2019.11.14 개정><2023. 3. 30. 개정><2024.3.20. 개정>

**제9조(교육품질관리)** ① 학과에서는 지속적인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매 학년도 마다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, 학과교육품질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, 교육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심의하여 개선안을 마련한다.

② 대학교육품질위원회는 학과 자체평가에 대한 결과를 심의하여 교육품질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한다. <2016.2.5 신설>

**제10조(기타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2024.2.22. 개정>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폐지규정)**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2001년 제정된 교육과정 운영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의 제5조(이수단위), 제6조(시간표 편성), 제7조(강좌 운영), 제10조(기타)는 202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